

조선시대 산릉조성에 있어서 看審에 대한 연구*

- 元陵을 중심으로 -

조인철 **

1. 서론
2. 『영종원릉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원릉조성의 과정
 - 1) 영종의 승하에서 흥릉허우지의 무산까지
 - 2) 건원릉 우2강의 봉표와 원릉의 조성
3. 흥릉 虛右地의 재봉심과 번복이유
 - 1) 身後之地로서 虚右地
 - 2) 흥릉 허우지의 불발사유
4. 소령원 청룡 2강에서 건원릉 우2강 구녕릉지까지
 - 1) 소령원 영역의 간심
 - 2) 건원릉 영역의 간심
5. 결론

1. 서론

조선시대의 왕위계승자가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할 일은 先王 즉 大行大王의 능묘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선왕이薨하고 나면 3곳의 도감이 설치되는데, 그것이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이다. 조선시대의 大行大王의¹⁾ 시신을 묻는 곳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은 山陵이었다. 그래서 산릉지의 선정에서부터 조성까지

*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조교수.

1) 조선시대에는 왕위계승이 이루어지고 난 후 승하한 先大王을 大行王 또는 大行大王이라고 칭하였다.

의 업무를 주로 산릉도감에서 주관하였고 그 모든 과정을 『山陵都監儀軌』에 소상히 기록하였다.

대행대왕의 산릉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길흉을 따져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看審’이라는 것은 일단의 전문가 집단이 후보지를 둘러보기 위해 현장에 가서 터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가 집단은 주로 산릉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호사를 비롯한 관리와 풍수에 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관상감 소속의 관리나 方外地師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에 의한 간심은 주로 初看審, 再看審, 三看審으로 이루어진다. 삼간심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간심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길하다는 것으로 일치되어 왕의 재가를 얻으면 비로소 산릉지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원릉이 동구릉 안에 위치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상 당시 官吏와 地師들의 간심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영조가 身後之地로 잡아두었던 홍릉의 虛右地로 가지 못하고, 왜 건원릉의 우측 산줄기에 묻힐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간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원릉의 터가 과거 寧陵의 자리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자리인데, 어떠한 이유로 여주의 터로 천릉하고 남은 已開土地를 원릉의 신릉지로 삼을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을 사용 가능하게 한 상황의 변화라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면, 전례를 중시하는 조선왕조의 관습상 동일한 허우지의 사례로서 원릉조성과 가까운 시기에 조성된 숙종명릉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문적 내용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간심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감여의 이론과 더불어 그 이전의 여러 산릉도감의 사례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산릉간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연구는 원릉이 동구릉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신병주의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이라는 책에서 아주 간략하게 ‘영조왕릉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원릉산릉도감의 소제목으

로 다루어진 것이 있다. 이 글에서 신병주는 영조가 원비 정성왕후가 묻힌 서오릉에 가지 못하고 동구릉에 묻힌 이유로 “(영조가) 정성왕후가 사망한 후 얻은 계비 정순왕후 때문이었다”라고²⁾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저서로 정해득의 『조선왕릉제도연구』가³⁾ 있다. 이 책은 경주의 신라왕릉, 공주·부여의 백제왕릉, 강화도의 고려왕릉은 물론 여러 곳에 산재한 조선왕릉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하였고, 특히 조선왕릉이 조성되는 과정과 관리체계를 영조원릉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여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17세기 조선왕실의 왕릉지 선정과정과 방외지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박권수의 연구이다.⁴⁾ 이 연구는 효종영릉의 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외지사의 참여양태와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이덕형의 『조선왕릉 택지와 산론』이라는 제목의 연구가⁵⁾ 있다. 이 논문은 사학전공의 연구결과물답게 왕릉의 撇地와 山論을 통하여 조선국왕의 통치력과 권위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그 외에 조선의 풍수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산릉도감의궤의 내용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의 후속작업으로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장답사와 함께, 위성사진, 의궤,⁶⁾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2) 신병주, 2007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함께, 286면.

3) 정해득, 2013 『조선왕릉제도연구』, 신구문화사, 201-245면.

4) 박권수, 2015 「17세기 조선왕실의 王陵地 선정과정과 方外地師의 역할: 孝宗과 顯宗대의 山陵조성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7-1, 33-47면.

5) 이덕형, 2013 『조선왕릉의 택지와 산론』,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영조의 국장과 관련된 의궤로는 국장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혼전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가 있다.

2. 『영종원릉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원릉조성의 과정

1) 영종의 승하에서 흥릉허우지의 무산까지

영조는丙申年(1776)⁷⁾ 3월 5일卯時(오전 5~7시) 경희궁集慶殿에서 승하하였다. 영조는甲戌年(1694) 9월 13일에 태어나 향년 83세로 생을 마쳤다. 영조는 실록상의 내용을 보면, 죽기 4일전(3월 1일)에 숭정전 동월대에서 3일제를 행하였고, 2일전(3월 3일)에 낮 시간에만 하더라도直赴人을⁸⁾ 직접 접견할 정도로 건강에 큰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날 저녁 戌時(19~21시)에 이르러 가래와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면서부터 급작스럽게 위중한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3월 4일에는 실록의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의 혼수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고, 바로 다음날 3월 5일에 승하한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이전 3개월 동안의 기사를 살펴보면, 어떤 불길한 징조를 알려주거나 하듯이 12월 1일에日蝕現狀을⁹⁾ 기록하고 있고, 12월 7일에는 영조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본인의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¹⁰⁾ 생각하였던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세손에게代理聽政할 것을 명하고¹¹⁾ 그것을 고집하여 관철시켰다. 영조는 사실 조선왕실에서 큰 병치례를 하지 않고 장수한 임금 중의 한 분이었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죽기 한 달 전에도 스스로 시를 짓고¹²⁾ 교시를 내릴 정도로 심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전통 41년이며 영조 재위 52년이다.

8) 武科 등에 정원 외로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이를 말한다.

9) 『英祖實錄』 126권, 영조 51년 12월 1일 甲辰〈일식이 있었다〉 이하 실록의 열람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를 참조함.

10) 위의 책, 〈약방에 답하다〉藥房에 답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좌우가 忠臣이다. 좌우가 충신이다.” 하였으니, 대개 어제의 酬應이 이미 많았고 常膳 역시 빠뜨려, 밤중에 痘症이 더해 참기름을 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략)

11) 위의 책, 12월 7일 庚戌〈왕세손에게 서정을 대리 청정하게 하다〉 임금이 왕세손에게 명하여庶政을 대리 청정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서야 겨우 순조롭게 결말이 났다. 83세가 다 되어 沖子가 나에게 효도함을 보게 되니 천만 다행이다. 구지로 가겠다는 하교는 잠시 보류하라.” 하였다.

12) 위의 책, 127권, 영조 52년 2월 8일 庚戌〈친히 여덟 구를 지어 『孝孫錄』에 써서 보이고 운각에게 간인하게 하다〉 임금이 친히 여덟 句를 지어 『孝孫錄』에 써서 보이고 芸閣을 시켜 刊印하게 하였다.



〈그림 1〉 弘陵 : 정성왕후릉. 오른쪽의 비워둔 자리를 虛右地라고 하고, 영조가 원비 정성왕후의 능을 조성하면서 자신이 묻힐 신후지지로 마련해둔 자리이었다.
 2016년 필자 촬영(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필자 촬영임)

왕위계승자로 世孫이었던 正祖의 당시 나이는 25세였다.¹³⁾ 왕위를 계승한 정조가 해야 할 첫 번째 업무는 대행대왕의 초상을 치르는 일이었다. 정조는 우선 그것을 담당할 院相으로¹⁴⁾ 영의정 金尙喆(1712~1791)을 임명하였다. 그다음 國葬업무를 총괄할 總護使로 당시 좌의정 申晦(1706~?)를 임명하였다. 영조가 승하한 바로 다음날 총호사인 신회는 영조가 자신의 신후지지로 마련해둔 유력한 葬地의 후보로서 弘陵의 虚右地에 관한 보고를 올렸다. 흥릉 허우지에 대한 정조의 의견은 “聖意(영조의 의중)는 오로지 右崗에 두셨었다.”¹⁵⁾이었다. 한편, 즉

13) 정조는 영종 28년(1752, 壬申年) 9월 22일 己卯日 丑時(오전 3~5시)에 출생하였다. 정조는 대리청정의 경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25세의 나이라면 사리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 『英祖實錄』 127권, 영조 52년 3월 5일 丙子 <대행 초상 때 首相을 院相이라 칭하고 승정원에서 모든 일을 품달케 하다>

15) 위의 책, 3월 6일 丁丑 <총호사 신회가 흥릉의 우강에 관해 아뢰다> 摶護使 申晦가 아뢰기를, “弘陵의 右崗은 大行朝에서 늘 칭찬하는 말씀이 있었으니, 대개 明陵의 舊例에 따르려 하신 것입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聖意는 오로지 우강에 두셨었다.” 하였다.

위식이 끝난 3월 12일에 대행 대왕의 시호·묘호·전호·능호를 정하는 자리에서 다른 號는 모두 정하였으나, 능호만큼은 홍릉의 허우지에 봉안할 것이기 때문에¹⁶⁾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능호에 대한 의논이 있는 그날 사도세자의 사당인 垂恩廟를 개보수할 도감을 설치함과 동시에 영조의 산릉공사를 책임질 산릉도감 제조로 洪樂性(1718~1798)을 임명하였다.¹⁷⁾ 또한 정조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임이 두터운 洪國榮(1748~1781)을 특별히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¹⁸⁾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장례도 난항을 겪게 된다. 3월 14일에 원상 김상철이 撤直되고¹⁹⁾ 3월 19일에 총호사로 임명하였던 신회가²⁰⁾ 도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堪輿學에 어두운 鄭厚謙(1749~1776)의²¹⁾ 하수인을 추천한 죄를 물어 파직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²²⁾

신회가 정조에게 있어서 政敵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숙청되어야 할 인물이었다는 점 외에도 허우지에서 발견된 十字石에 새겨진 遺教에서²³⁾ 언급된 '分金 辛

16) 『正祖實錄』 1권, 정조 즉위년 3월 12일 癸未 <대행 대왕의 시호·묘호·전호·능호를 정하다> 大行大王의 시호를 龜文宣武熙敬顯孝라 하고, 廟號를 英宗이라 하고, 殿號를 孝明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陵號에 있어서는 장차 弘陵의 虛右地에 봉안할 것이기 때문에 長陵과 明陵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홍릉이라 하기로 의논하여 정하였다.

17) 위의 책, 癸未 <수은묘 개건 도감을 설치하다> 垂恩廟改建都監을 설치하고 具允鉉을 제조로 삼았다. 수은묘는 思悼世子의 사당이다.

18) 위의 책, 3월 13일 甲申 <홍국영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다> 洪國榮을 특별히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19) 위의 책, 3월 14일 乙酉 <원상 김상철이 철직하다> 院相 金尙喆이 撤直하였다. 옛 준례에嗣位한 날에는 원상이 철직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대로 入直하도록 명했었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직하게 된 것이었다.

20) 좌의정을 지낸 신회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할 때 적극 동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1) 정후겸은 며칠 뒤 화완공주와 함께 정조가 즉위할 때까지 갖은 모략과 방해를 일삼은 죄로 함경도 경원부에 유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正祖實錄』 1권, 정조 즉위년 3월 25일 丙申 <정후겸을 귀양 보내고, 윤양후·윤태연을 이배하여 친극하게 하다>

22) 위의 책, 3월 19일 庚寅 <총호사 신회를 파직시키다> 摠護使 申晦를 파직하였다. 신회가 도감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추천한 相地官은 鄭厚謙의 私人으로 堪輿學에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卯辛酉’와 관련한 ‘拘忌甲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결국 영조가 자신의 신후지지로 점지해두었던 곳은 소위 分金法과 산릉지의 年運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²⁴⁾ ‘구기갑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뒤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정조는 신회를 대신할 인물로 좌의정으로 강등 임명된 김상철을 총호사로 임명하였다.

2) 건원릉 우2강의 봉표와 원릉의 조성

정조는 3월 20일에 김상철을 다시 해직하고²⁵⁾ 영의정 金陽澤(1712~1777)을 총호사로 임명하였다. 영조의 국장을 책임질 총호사가 초기 15일 동안에 3번이나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정조는 대행대왕의 뜻을 받들어 홍릉의 허우지에 모시려고 하였으나, 소위 ‘拘忌甲年’의 조건에 걸려 다른 곳을 간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²⁶⁾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국장기간 중의 보름 남짓을 허비하고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홍릉 외에 경릉, 순릉을 간심하고, 장릉의 청룡 4강과 鷺峯山下 昭寧園 청룡 2강에 대하여 5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간심하였다.

이러한 후보지 중에서 특히 소령원 청룡 2강의 乳穴(약간 볼록한 자리)에²⁷⁾

23) 『英祖山陵都監儀軌』(奎135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7면. 검색일: 2017. 05.13.) (상략) 弘陵을 간심하고 弘陵虛 우측에 埋安한 標石 上石과 下石에 새겨진 글을 별단으로 書入함. 이하 원릉의 산릉도감의 자료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kyupdf/pdfview_center.jsp)를 참조함.

24) 위의 책 33면. 3월 19일 산릉 裁穴을 糜定하였으니 日官으로 하여금 吉日을 택하도록 아뢰. 택일하려 총호사 이하가 地師를 거느리고 賓廳에 모였는데 拘忌年甲은 自內로 書下한 전례를 아뢰. 총호사 좌의정 申晦를 과직하고 영의정 金尙暉을 임명함.

25) 『正祖實錄』 즉위년 3월 28일 己亥 <좌의정 김상철의 해직을 윤허하다> 좌의정 金尙暉의 해직을 윤허하였다. 김상철이 의리를 들어 계속 상소했기 때문이었다.

26) 이를 두고 정혜득은 정조가 이곳 홍릉의 풍수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황상 그러한 의견을 낸 것은 원릉이 동구릉 영역에 조성되고 상당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한 정조의 견해이다. 따라서 홍릉을 검토하던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짐작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정혜득, 앞의 책, 209-210면 참조.

27) 풍수이론의 하나인 穴論에서 혈의 형태에 따라 4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그 중 突穴과 乳穴은 무덤자리[穴場]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것을 말하며, 窠穴과 鉗穴은 혈장이 오

대하여 주목하고 占標處에 대한 별목을 실시하고 재간심, 삼간심을 마치었다. 하지만, 4월 6일 이를 종합 검토하는 자리에서 地師 柳東亨이 올린 山論에서 ‘申方空缺凹風’의²⁸⁾ 작은 흠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산릉지로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정조는 그 다음날로 4월 7일 동쪽의 교외 쪽에 산릉지로 쓸 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4월 8일에는 아직 산릉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장기간의 1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으므로, 왕이 초조해하며 康泰陵, 光陵, 獻陵 등의 부근에도 쓸 만한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4월 9일에 건원릉의 우측 2강은 간심에 참가한 여러 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山論에서 十全之原 내지는 天成之地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새로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드디어 4월 11일 실록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조의 산릉을 홍릉의 허우지가 아니라 건원릉 우2강의 새로운 자리로 결정하고 ‘弘陵’ 대신에 ‘元陵’이라는 새로운 능호를 정하였다.²⁹⁾ 4월 15일 예조에서 정해준 택일에 따라 辰時(오전 7~9시)에 斬草破土를 위한 告由祭를 지내고, 별목한 상태에서 다시 상세히 간심하여 亥坐巳向으로 裁穴(관이 묻힐 자리를 마름질)할 것을 정하고 封標하였다. 4월 19일 巳時(오전 9~11시)에 능역공사를 위한 始役 을 하게 된다. 한편, 산릉의役事를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4월 22일에 영의정 김양택을 勉副하고 다시 김상철을 총호사로 임명하고 산릉일의 책임을 맡기게 된다. 7월 27일 酉時(오후 5~7시)에 下玄宮(하관)하고, 뒷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여 영조가 승하한 지 5개월에서 2일이 모자라는 148일에 해당하는 8월 3일 午時(오전 11~오후 1시)에 安陵奠을 실행하고 산릉역사를 마치었다.

목하게 생긴 것을 말한다. 유혈은 젖가슴 모양을 의미하는데, 돌혈에 비해 조금 덜 불룩한 형태를 말한다. 대개의 산릉지는 유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申方空缺凹風의 恐有는 남서서쪽의 부분이 폭 꺼져 있어서 그 쪽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이 殺風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29) 『正祖實錄』, 정조 즉위년 壬子 <대행 대왕의 산릉을 정하고 능 이름을 元陵으로 정하다>

3. 흥릉 虛右地의 재봉심과 번복이유

1) 身後之地로서 虚右地

성리학적 관념이 팽배하였던 조선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상의 유체를 묻을 적정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망자자신이나 후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이었고,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왕이든 신하이든 일반평민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게 마련인데,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여유있는 노인이라면 자신이 죽 고 난 후 유가족에게 장지선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기 전에 미리 자리를 정해두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死後遺體를 묻을 곳을 미리 정해둔 것을 ‘身後之地’라고 하는 것이다.³⁰⁾

한편, 국가의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사후무덤을 미리 정하고 생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성리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예제적 정치이념을 표방한 조선왕조에서 중국의 진시황처럼 생전에 국가적 공력을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무덤을 조성한 사례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사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먼저 죽은 왕비의 능을 조성하면서, 그 오른쪽을 비워두는 정도로 신후지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虛右地’라고 부르는 것이며 조선왕조를 통틀어 몇몇 왕의 경우에 이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허우지야말로 그곳에 묻힌 왕이 직접 정한 곳으로서 당사자의 터잡기 관념과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흥릉과 비교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사례로 숙종이 계획한 明陵의 허우지를 들 수 있겠다. 명릉은 신후지지를 마련한 숙종이 허우지에 들어간 성 공사례이고, 흥릉은 영조가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허우지로 남긴 실패사례인 것이다. 허우지가 허우지이되, 그곳은 일시적 허우지로서 반드시 채워져야만 될 허우지인 것이다. 허우지의 특이성은 그것을 지정한 왕만이 그곳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30) 신후지지가 왕릉일 경우는 특별히 壽陵이라는 호칭으로 명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의 명릉은 하나의 영역 내에 3기의 능이 있는 형식인데, 제1계비 인현왕후와 숙종의 능이 하나의 岡(산줄기)에 雙陵으로 자리하고 있고, 북서쪽의 또 하나의 강에 제2계비인 인원왕후가 홀로 單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원비인 仁敬王后는 같은 西五陵의 능역에 있기는 하나 翼陵이라는 별도의 능호를 가진 채 별도의 능역에 홀로 단릉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는 20세에 죽었는데, 숙종은 익릉의 자리를 정하면서 허우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당시 자신이 죽으면 그 옆에 묻히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 때 숙종의 나이가 인경왕후와 동갑이었고, 인경왕후로부터 후사도 없었고, 향후 계비를 들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허우지를 잡아들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제1계비인 인현왕후가 승하하였을 때, 서오릉 내에 별도의 능호를 부여한 명릉을 정하면서 허우지를 마련하게 된다. 그 때 숙종의 나이는 39세이었고 당연히 제2계비를 받아들일 것을 예상되는 시기이었다. 하지만, 숙종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인현왕후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원비도 아니고 앞으로 맞이할 제2계비도 아닌, 제1계비의 능에 허우지를 마련함으로서 그 곁에 묻히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숙종이 비록 자신이 결정한대로 허우지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묻히는 것은 영조의 경우처럼 자신이 죽고 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왕위를 물려받은 후대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국가적 대사인 국장을 치름에 있어서, 선왕이 이처럼 자신의 신후지지로서 허우지를 마련해둔 상태라면 이러한 遺教를³¹⁾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거역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숙종의 경우도 그의 사후에 제2계비로서 대왕대비가 살아있었지만, 아무리 신체 허약한 경종이 왕위를

31) 『景宗實錄』 1권, 경종 즉위년 6월 13일 戊申 <총호사가 자신의 륭을 인조의 륭에 따르라고 한 숙종의 유교를 아뢰다> 摠護使가 아뢰기를, “신사년 國喪(인현왕후의 명릉조성) 때에 山陵의 右便을 비워 두었는데, 한결같이 長陵의 제도에 따르라는 大行大王의 遺教가 이미 있었으므로 돌을 새겨 置標하였습니다. 곧 陵所에 나아가 奉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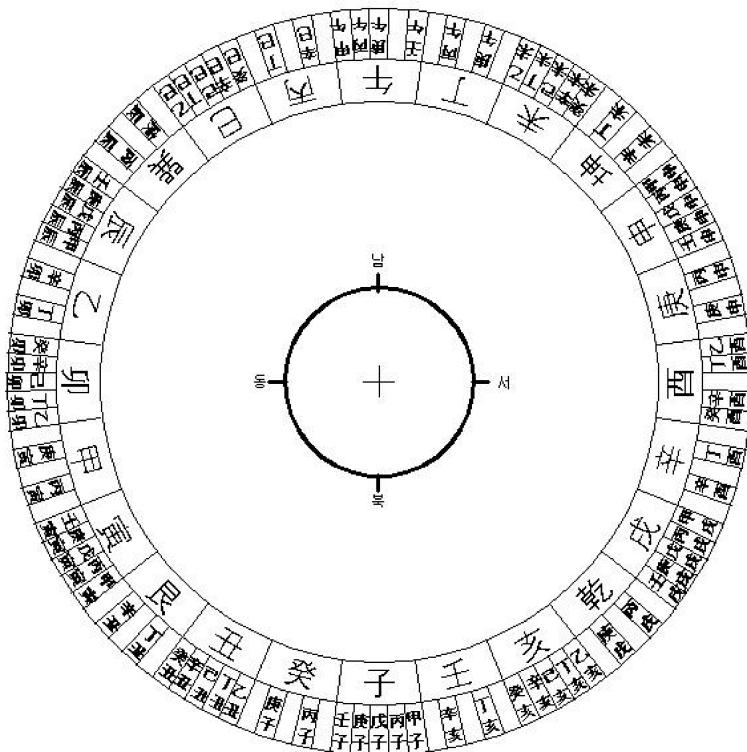
계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대로 숙종이 마련해둔 허우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무시하고 새로운 능지를 찾아보도록 지시내지는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때 대비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³²⁾ 銀子를 국장에 보태어 쓰라고 내놓는 것이 전부이다. 숙종의 유교는 허우지에 묻어둔 墓標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총호사인 李健命(1663~1722)이 아뢰기를 '分金'에서 약간의 실제와 차이가 있지만, 숙종이 남긴 유교를 따르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경종에게 보고하였고, 경종은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숙종명릉의 매표에서 드러난 분금에 대하여 이건명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금'과 '대왕의 연갑구기'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영조의 흥릉 허우지의 경우에 문제가 된 '분금'과 '구기갑년'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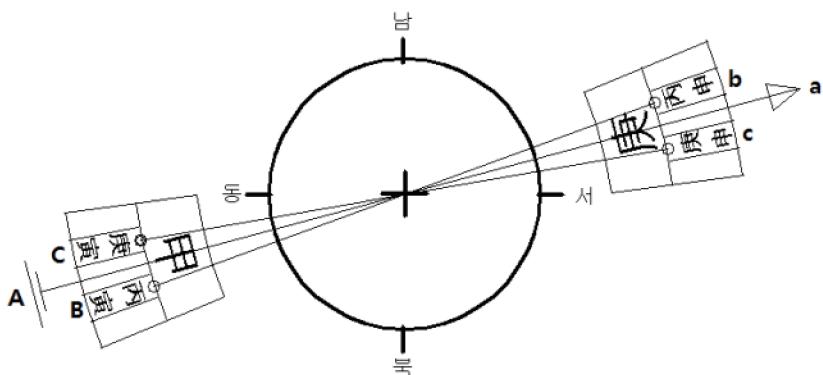
“埋標를 살펴보니 甲坐庚向이었습니다. 仁顯王后陵의 分金은 庚寅·庚申인데, 標石에 새긴 것은 丙寅·丙申이었으니, 대개 경인·경신은 大王의 年甲에 拘忌가 되어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³³⁾

32) 위의 책, 즉위년 6월 15일 庚戌 <왕대비가 대상 때 비용으로 쓰도록 내탕고의 銀을 도감에 내리다>

33) 위의 책, 경종 즉위년 6월 18일 癸丑 <산릉 총호사 이건명이 능의 외향을 숭릉의 준례에 의거할 것·왕비의 신위와 상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모실 것을 청하다> 임금이 山陵提調 摠護使 李健命을 引見하니, 아뢰기를, “山陵의 墓標를 살펴보니 甲坐庚向이었습니다. 仁顯王后陵의 分金은 庚寅庚申인데, 標石에 새긴 것은 丙寅丙申이었으니, 대개 경인·경신은 大王의 年甲에 拘忌가 되어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崇陵을 살펴보았더니, 西坐卯向은 두 능이 모두 같았으나 大王陵은 癸酉癸卯의 分금이요, 王后陵은 辛酉辛卯 분금이었는데, 外向은 두 능이 똑같았습니다. 대개 地家들은 외향으로써 큰 관계를 삼지 않으므로, 이제 이 분금이 왕후 능과 더불어 조금 다르나 외향은 숭릉의例에 의하여 전에 있던 陵을 죽았습니다. 일찍이 長陵의 假丁字閣을 보니 體樣은 약간 작은데, 王妃의 陵이 먼저 있었고 大王의 능이 뒤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桦宮을 옛 丁字閣에 排設하고 王位·牀卓은 가정자각에 옮겨 奉安하였다가 3년 후에 毁撤하였습니다. 지금도 장릉의 例를 따라 王비의 신위·상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봉안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림 2〉 24방위와 120분금. 필자 작성



〈그림 3〉 갑좌경향(A-a)과 분금 : 丙寅·丙申(B-b) 庚寅·庚申(C-c). 필자 작성

甲坐庚向이라는 것은 인현왕후와 숙종의 쌍릉분의 좌향을 24방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120방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볼 때 인현왕후의 능이 庚寅·庚申의 분금, 숙종의 능이 丙寅·丙申의 분금이라는 것이다.³⁴⁾ 결국 인현왕후릉이나 숙종릉이 모두 15도의 범위인 갑좌경향인 것은 동일하나,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갑좌경향이라고 하더라도 15도 속에 3도씩 구분한 또 다른 5개의 분금이 존재하므로 인현왕후릉을 경인·경신으로 하고 숙종릉을 병인·병신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같은 갑좌경향의 자리에서 분금도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번거롭고 복잡하게 서로 다른 분금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진다. 총호사 이건명도 이점에 대해서 경종이 의아해 할까봐, ‘大王年甲拘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현왕후와 숙종의 ‘연갑구기’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왕연갑구기’는 소위 納音五行간의 相生相剋論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현왕후는³⁵⁾ 1667년인 丁未年 4월 23일 丁卯日 午時(오전 11시~오후1시)경에 태어났으며, 숙종은 1661년인 辛丑年 윤달 8월 15일(辛酉日)에 태어났다. 그래서 납음오행을 따져보면 인현왕후가 태어난 정미년은 天河水가 되고, 숙종이 태어난 신축년은 壁上土가 된다.³⁶⁾ 인현왕후릉에 적용한 분금이 경인·경신이라고 하였는데, 경인은 松柏木이 되고 경신은 石榴木이 된다. 따라서 인현왕후릉의 공간적 좌표인 분금은 모두 木이고, 탄생년의 시간적 좌표는 水가 된다. 시공간의 좌표끼리의 관계를 보면 水生木으로서, 바로 相生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현왕후릉의 경우에 시간적 좌표가 공간적 좌표를 生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숙종이 묻힐 허우지의 분금이 병인·병신이라고 하였는데, 병인은 爐中火가 되고, 병신은 山下火가 된다. 따라서 분금의 납음오행은 모두 火가 되고 숙종이 태어난 신축년의 납음오행이 土이므로, 火生土로서 인현왕후릉의 경우와는 반대로

34) 24방위는 360도를 24등분하여 하나의 눈금간격이 15도인 것이고, 120방위는 120등분한 것으로 눈금간격이 3도인 것이다. 이 3도 간격의 120분금을 속칭 ‘分金’이라고 하는 것이다.

35) 『肅宗實錄』 35권, 숙종 27년 11월 23일 丙午〈임금이 친히 지은 대행왕비의 행록과 이여가 지어 바친 후기〉

36) 납음오행의 60갑자 분류표는 조인철, 2008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460면 참조.

공간적 좌표가 시간적 좌표를 생하는 것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로 미루어 볼 때, 시간이 공간을 생하든지, 공간이 시간을 생하든지 관계없이 상생의 관계만 형성된다면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明陵 : 인원왕후릉[단릉]에서 바라본 숙종릉과 인현왕후의 능[쌍릉].
숙종은 인현왕후릉의 자리를 잡을 때 허우지를 만들었고 승하 후 그 곳에 묻혔다.
2009년 촬영

만일 숙종대왕이 묻힐 허우지에 대하여 먼저 조성한 인현왕후릉과 같이 경인·경신의 분금을 적용한다면 木剋土로서 상극관계가 된다. 이를 두고 총호사 이건명이 ‘대왕의 연갑에 구기가 되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분금과 망자의 탄생년의 오행관계가 상생이 되는 것을 길한 것으로 보고, 상극관계가 되는 것을 흉하게 보는 것을 바로 ‘대왕연갑구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명릉의 허우지는 분금을 서로 다르게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서 특별한 문제의 제기가 없이 숙종의 신후지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명릉의 경우 숙종의 승하시 제2계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제1계비의 곁에 만들어둔 허우지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홍릉 허우지의 불발사유

명릉과는 달리 홍릉의 허우지는 영조의 유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후지지가 되지 못한 사례이다. 홍릉의 허우지가 빈 채로 영원히 남게 된 이유가 ‘신병주의 주장’처럼 계비 정순왕후의 개입 때문인지, 본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명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조의 국장에 있어서도 우선 대행왕의 유지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장례의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丙申年 (1776) 3월 영조가 승하한 지 8일째 되는 날 13일에 홍릉의 허우지에 묻혀있는 十字石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정조에게 보고된 墓標의 내용에는 숙종명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향과 분금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총호사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매표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매표가 나온 이후인 3월 17일에 당시 총호사의 업무를 맡고 있던 좌의정 申晦가 정조의 허락을 받아 方外地師를 데리고 홍릉 허우지에 대하여 재봉심하러 다녀왔고, 3월 19일에는 이미 산릉지가 정해졌으니 開土 등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吉日을 정하는 擇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조는 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 채 윤허하였고, 禮曹의 빈청에서 총호사를 비롯하여 산릉도감당상, 관상감영사, 예조당상, 地師 등 관계자들이 모여 택일을 위한 회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 때야 비로소 ‘拘忌年甲의 전례’가 있어 감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⁷⁾

허우지를 신산릉지로 삼고자 하였던 계획을 무산시키는 ‘구기년갑의 전례’에 대한 견해가 대두되면서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고, 산릉조성의 업무가 일단 중지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담당자들이 책임추궁을 받게 되었고, 최우선적으로 총호사 좌의정 신희가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감여학에 밝지 못한 지사를 추천하였다는 점을 들어 3월 19일부로 파직되었던 것이다. 특히 신희가 추천한 지사 중에 鄭厚謙과 관련된 인물이 있었는데, 당시

37)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33면 “丙申三月十九日 都監郎廳以摠護使意 啓曰 山陵裁穴已爲稟定矣卽令日官推擇吉日事 何如 傳曰允 同日禮曹 啓曰 以摠護使啓辭 山陵裁穴已爲稟定卽令日官推擇吉日事 允 下矣摠護使及 山陵都監堂上 觀象監領事 本曹堂上 卽爲來會賓廳率諸地師 同爲推擇 而拘忌年甲自 內書下既有前例敢”

정후겸은 특히 정조가 꺼리는 문제적 인물이었던 것이다.³⁸⁾ 어찌 되었던 영조가 신후지지로 잡아두었던 흥릉의 허우지는 매표의 내용상 더 이상 거론조차 할 필요없이 쓸 수 없는 터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구기년갑’이 앞에서 다룬 ‘연갑구기’와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有前例’라고 한 것에 비추어 이전의 사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기년갑의 전례는 숙종의 원비 仁敬王后的 龔陵을 조성하면서 그 사례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구기년갑도 역시 分金과 연관된 것인데, 그 당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관상감겸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金鳴夏(1657~1719)이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인경왕후릉을 위한 看山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丑坐未向에 辛丑·辛未의 분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김명하만이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신축분금이 국가년갑에 거리낌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³⁹⁾ 이때는 신릉지로 여러 곳의 후보지를 거론하다가 敬陵의 火巢내에 축좌미향의 자리로 결정한 이후이었던 것이다. 김명하가 신축분금에 대하여 불가의 의견을 낸 것은 下玄宮하는 해[년간, 年干]와 분금의 天干이 같으면 불길하므로 이를 피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명하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고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고 南中俗(남쪽 지방의 풍속)에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하의 구기년갑론은 소위 ‘長年甲忌避之法(이하 장년갑)⁴⁰⁾’이라고 하여, 앞에서 살펴본 ‘대왕연갑’과는 다른 내용이다. 즉, 숙종의 1계비인 인현왕후의 산릉

38) 『正祖實錄』 즉위년 3월 19일 庚寅〈총호사 신회를 파직시키다〉 摠護使 申晦를 파직하였다. 신회가 도감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추천한 相地官은 鄭厚謙의 私人으로 堪輿學에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39) 『(仁敬王后 龔陵) 山陵都監儀軌』(K2-23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庚申 11월 17일 癸巳 44b면 “觀象監兼教授金鳴夏 欲用丁丑丁未分金 而諸人皆以爲不及辛丑辛未 云 則鳴夏乃生好勝之心倡言 辛丑有拘於國家年甲不可用 (하략)” 이하 장서각본의 산릉도감 의궤는 장서각 홈페이지(<http://yoksa.aks.ac.kr/main.jsp>)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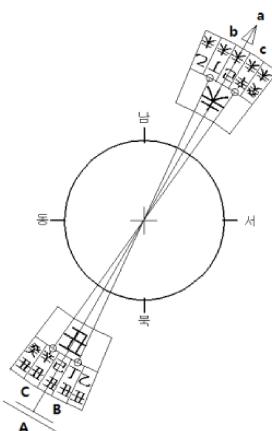
40) 위의 책, 47a면 “此也羅解百二十分金又以辛丑爲大吉故定爲裁用矣金鳴夏忽發家長年甲忌避之說再三詰問其古方出處 則鳴夏答以古雖無此文而鄉曲間或有年甲忌避之事云云大抵葬爲亡命受生旺之氣避克害之鄉其法以亡人生命納音爲主如命遇土穴分金爲此助吉通用之方裁穴分金無家 長年甲忌避之法”

도감에서 살펴본 ‘대왕연갑’처럼 납음오행을 따져서 상생과 상극을 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말이다. ‘장년갑’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공격을 받았으나, 이미 입에서 뱉어 나온 말이라 이를 무시하고 국장을 치르기에는 망자에게 미안한 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설불리 김명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축·신미를 분금으로 삼는다면 案山을 正對하게 바라보는데, 그것을 적용하여 정축·정미를 분금으로 삼는다면 안산을 약간 빼딱하게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다.⁴¹⁾



〈그림 5〉 翼陵 : 숙종의 원비 인현왕후의 름. 능의 중심이 시계방향으로 6도정도 더 돌아가야만 멀리 보이는 朝山의 높은 곳과 마주할 수 있는데, 김명하의 개입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2007년 촬영



〈그림 6〉 축좌미향(A-a)과 분금 : 丁丑·丁未(B-b), 辛丑·辛未(C-c) 익릉은 정축정미의 분금으로 산릉조성이 이루어졌다.
필자작성

김명하의 주장과 같이 익릉의 분금이 ‘장년갑’에 해당된다는 말은 공사의 일정상 下玄宮의 예상시기가 인경왕후가 승하한 다음해인 辛酉年(1682)이 되는데, 이때 하현궁시기의 신유와 분금인 신축·신미에 포함된 천간 ‘辛’이 서로 같은 것으로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길하다는 것이다.

41) 위의 책, 46a면 “丁丑丁未雖不及 於辛丑辛未之正對”

결국, 인경왕후의 능은 신유년 2월 22일에 하현궁하였고, 분금은 김명하의 주장대로 정축·정미로 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⁴²⁾ 이것이 바로 영조의 산릉도감에서 언급되었던 ‘구기년갑의 전례’이며, 번듯이 매표에 분금이 언급되어⁴³⁾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례를 고찰하여 ‘대왕연갑’과 ‘장년갑’을⁴⁴⁾ 구분하여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따지지 않고 장례진행을 위한 택일을 요청하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홍릉의 매표에 기록된 분금을 가지고 ‘대왕연갑’과 ‘장년갑’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왕연갑’에서는 영조의 탄생이 甲戌年(1694)이므로 火가 되고 병진·병술이 土이므로 火生土의 상생관계가 되어 문제가 없다. 한편, 영조의 국장에서 하현궁 예상 시기가 丙申年이었는데, 분금이 丙辰·丙戌이었다. 따라서 천간인 丙이 양쪽으로 등장하므로 ‘장년갑’의 저촉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매표에 기록된 분금은 ‘대왕연갑’에는 합당하나, ‘장년갑’의 적용을 받아 결국 홍릉의 허우지를 영조의 산릉지로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⁴⁵⁾ 홍릉의 허우지가 신산릉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홍릉 假丁字閣의 조성 등에 들어간 물자와 인력 그리고 소요된 시간 등이 상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만 감안하더라도 정조는 총호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2) 위의 책, 102a-102b면 “辛酉三月初一日 [주:都監提調右參贊朴信圭 行大司成李翊相 慶尙監司李翊] 山陵役事既已完畢臣等今方上去爲白去乎陵所別擺撥撤罷事令兵曹趁速分付爲白只爲山陵良龍丑入首丑坐未向丁丑丁未分金 庚破”

43)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奎13586) 25-27면 “同日都監別單 弘陵虛右處理標下石所刻 巽龍良剝換巽入首 巽坐十乾向石面與左邊地平相齊 丙辰丙戌分金 右邊巽龍良剝換巽入首巽坐乾向癸得水庚破 (하략)”

44) ‘대왕연갑구기법’과 ‘장년갑기피지법’은 모두 ‘구기년갑법’으로 산릉도감에서 논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위의 두 가지 ‘구기년갑법’은 서로 논리가 다르므로 이와 같이 명칭을 따로 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45) 허우지의 매표에 분금을 병진·병술로 한 것은 영조의 생년이 甲戌年(1694), 9월 20일이므로 납음오행상 山頭火가 되고, 분금은 각기 丙辰-沙中土, 丙戌-屋上土가 되어 화생토로서 상생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만일 분금 경진·경술로 한다면 각기 白鐵金, 釵鉤金이 된다. 따라서 화극금의 상극관계가 되므로 사용불가이다. 매표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소위 無字埋標로 하였다면 몰라도 이미 선왕이 遺教로 정해놓은 것이었으므로 후왕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분금을 적용하여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우지가 불발이 된 이유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拘忌年甲의 前例’ 즉 ‘長年甲避之法’의 적용 때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산릉도감의궤나 실록에 등장하는 기록만으로 살펴볼 때는 산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비전에서 개입하는 일이라고는 銀을 내놓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대비전의 경우에만⁴⁶⁾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명릉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만큼 대부분의 국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였던 관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허우지의 불발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개입이나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장년갑피지법’의 적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소령원 청룡 2강에서 건원릉 우2강 구녕릉지까지

1) 소령원 영역의 간심

홍릉의 허우지가 의심할 여지없이 유력한 신산릉지의 후보이었으나 소위 ‘장년갑’의 적용을 받아 무산된 이후로, 산릉지의 물색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후보지를 돌아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월 22일에 서부에 위치한 敬陵, 順陵, 長陵 등을 차례로 간심하여 보았으나, 별로 좋은 곳을 찾지 못하였다. 다음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昭寧園의 영역이다. 소령원은 영조의 친어머니인 淑嬪 崔氏(1670~1718)가 묻혀있는 곳이다. 영조가 생전에 자주 찾아가서⁴⁷⁾ 묘제를 지냈던 곳인 만큼, 영조의 신산릉지로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령원 영역 내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高嶺 鶯峯山下의 청

46) 『正祖實錄』 즉위년 3월 12일 癸未 <왕대비가 은자 1천 낭을 유사에게 내리도록 언문으로 하교하다> 왕대비가 언문으로 하교하여 銀子 1천 낭을 有司에게 내려 경비에 보충하도록 하고, 내려준 은그릇으로는 陵殿의 비용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47) 『英祖實錄』 36년 10월 1일 <소령원에 나가 사초를 고쳐 입히고 육상궁에 참배하다>; 43년 윤7월 13일 <소령원에 쓸 향을 지영하다>; 43년 윤7월 17일 <소령원에 향을 전하다>; 46년 9월 2일 <소령원에 제사를 지내고 능원관을 승륙시키다>

룡 二岡上에 西坐乳穴(동향의 다소 불록한 곳)을 포함한 몇 곳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1776년 3월 28일에 제시된 山論에서 ‘유좌유혈’에 대한 지사들의 監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사 金基良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龍脈(신줄기)은 마치 딱따구리[喙木]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듯이 대단한 기세이다. 金星體(둥그런 봉우리)가 솟아올라 머리가 되고 水星體(산봉우리)의 굽곡이 물 흐르는 듯한)가 흘러내려 脈이 되니 참으로 귀한 것이다. 좌측은 강하고, 우측은 泉深土厚하다. 이것이 바로 龍眞穴正(산맥이 참되고 혈이 바름)이다. 물이 盤桓(머뭇거림)하고 朝案(조산과 안산)의 拱揖이 부실하지 않으니 작은 흠결도 없다. 이를 두고 十全之地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그 다음 지사 李衡允은 다음과 같이 監評하였다. “용이 동적이고, 물은 정적이며 둘러싸고 周密하고, 侍衛端肅하다. 穴星(뒤의 산봉우리)은 尊重하고 案對(앞의 산)는 수려하다. 게다가 天星理氣의 부적합함이 없고 참되니 이를 두고 十分 純吉之地라고 할 만한 것이다.”⁴⁹⁾ 지사 金田은 다음과 같이 監評하였다. “山明水麗하고 龍勢雄壯하며 穴脈融通한 곳이다. 案對는 相迎하며, 水法은 격에 맞고, 龍虎(청룡과 백호)는 拱抱(서로 껴안음)한다. 명당은 평원하고, 捍門은 關攔하다. 奇偶理氣와 轢頭星宿가 부적합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眞龍正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⁰⁾

48)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40-41면 “昭寧園青龍第二崗西坐乳穴山論 地師金基良以爲 此龍之來況 若喙木飛空樓臺聳霄 其勢之至大者也 金星起頭 水星落脈 其星之至貴者也 左強右稱泉深土厚 乃是龍眞穴正者也 且其水之盤桓 朝案之拱揖不失 其度一無少欠 豈非十全之地哉”

49) 위의 책, 41면 “地師李衡允以爲龍則動水則靜纏護周密侍衛端肅穴星尊重案對秀麗而天星理氣無不合格真是十分純吉之地也”

50) 위의 책, 41면 “地師金田以爲山明水麗 龍勢雄壯 穴脈融通 案對相迎 水法得格 龍虎拱抱 明堂平圓捍門關攔而奇偶理氣轉頭星宿無不湊合是爲眞龍正穴也”



〈그림 7〉 소령원 :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묻혀있는 곳이다. 2002년 촬영

그 다음은 같은 산줄기이기는 하나 향을 달리할 수 있는 자리로 壬坐乳穴(남동향의 다소 불록한 자리)에 대한 각 지사의 감평이 담긴 산론이다. 지사 김기량은 다음과 같이 감평하였다. “龍勢魁雄(산줄기가 웅장함)하고 水口重疊(수구가 닫힘)하며 좌우가 鬱嶂(울창하고 가파름)하고 조안이 문득 빼어나고 국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처가 높아서 藏風納氣가 되지 않는 것이 흠이다.”⁵¹⁾ 지사 이형윤은 다음과 같이 감평하였다. “내룡이 雄剛하고 局勢固密하며 近案이 有浪痕出하고 물줄기 역시 直流決非하니 진룡이 혈을 만든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지사 김홍집은 다음과 같이 감평하였다. “來龍의 起伏이 웅장하고 용호가 서로 감싸 안으며 陰陽相配하며 穴法이 참되고 명당이 평원하니 眞至貴之格이다.”⁵³⁾

51) 위의 책, 41면 “地師金基良以爲 龍勢魁雄 水口重疊 左右鬱嶂 朝案葱秀 可謂成局 然而穴處騰漏 不能藏風納氣 是可爲欠”

52) 위의 책, 41면 “地師李衡允 以爲來龍雄剛 局勢固密 而近案有浪痕出水亦直流決非 眞龍作穴之地”

53) 위의 책, 40면 “指告地師金弘集以爲 來龍起伏雄壯 龍虎彎抱 陰陽相配 穴法眞的 明堂平圓 真至貴之格”

그 다음은 교하로 가서 향교가 있는 뒤쪽 乾坐乳穴에 대한 각 지사의 山論도 수록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사 김기량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내룡의 기복이 흡사 肇拔의 기세이며, 조산이 앞 쪽을 호위하면서 妍美의 자태가 있다. 하지만 내당이 너무 넓고 穴頭가 아래로 처져있고 물이 오고가는 것이 약간의 흠결이라 하겠다.”⁵⁴⁾ 지사 이형윤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平田에서 맥이 나와서 頓起하는 들판의 혈성이다. 게다가 당국이 광활한 것이 흠이다. 오른쪽의 산줄기가 低平한 것이 흡사 제대로 된 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⁵⁵⁾ 지사 閔愿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龍行平地이고 介字모양의 肇拔脈이 정출하여 左降右伏에 前迎後衝하며 三堂이 분명하고 衆水會朝하는 형국이다. 金誥爲案에 혈이 길한 기운을 품고 拱衛相輔正하니 이것이 眞龍이다.”⁵⁶⁾

이러한 지사들의 견해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령원의 유좌유혈을 제외하고 어느 곳이든 1~2명의 지사가 흠결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령원의 유좌유혈이 初看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 절차로 실력있는 지사를 좀 더 보강하여 再看審을 진행하였다. 3월 30일에 올라온 별단에 지사 鄭餘慶의 감평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鸞翔鳳舞의 지세이고 回龍顧祖, 祥雲奉月의 형국이다. 山澤通氣의 격으로 청룡이 겹겹이 彎抱하고 백호가 蹤蹲柔順하다. 여러 산봉우리들이 拱拜하고 주위의 사격이 翳聚하는 땅이니, 바로 이런 곳을 구하기 어려운 十全大吉의 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⁷⁾ 소령원의 유좌유혈은 재간 심에서도 ‘십전대길’의 평가를 받자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터의 무성한 초목을 벌목한 뒤에 최종 간심인 三看審을 하게 된다.⁵⁸⁾ 별목의 일시를 4월 3일

54) 위의 책, 41면 “地師金基良以爲 來龍起伏 似有肇拔之勢 朝山護前 亦有妍美之態 然而內堂太闊 穴頭低垂 且水之來去 少有欠矣”

55) 위의 책, 41면 “地師李衡允以爲 平田度脈頓起 穴星於野中 而第欠堂局曠闊 右砂低平 似非眞之地也”

56) 위의 책, 42면 “指告地師閔愿以爲 龍行平地 而肇拔脈從介字 而正出左降右伏 前迎後衛 三堂分明 衆水會朝 金誥爲案 穴含吉氣 拱衛相輔正 是眞龍”

57) 위의 책, 44면 “同日(3월 30일)都監別單 昭寧園 青龍第二崗 西坐乳穴 山論 地師 鄭餘慶以爲 鳳翔鳳舞之勢 回龍顧祖之局 祥雲奉月之形 山澤通氣之格 青龍重重彎抱 白虎蹲蹲柔順 群巒拱拜 諸砂翕聚 難求難遇 十全大吉之地”

58) 위의 책, 45면 “山陵三看審時 上下樹木茂密處 苟除然後 可以相地完定”

申時로 택일을 받았으나, 마침 그날에 비가 심하게 오는 바람에 별목 및 고유제 진행이 무산되고, 두 번째로 받은 4월 6일 卯時에 三看審이 진행되었다. 4월 6일의 별단에 기록된 지사 2인의 별목 후의 유좌유혈에 대한 감평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사 金相鉉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龍穴의 行道와 結作이 모두 金水相生 을 이루고 있으며, 희룡고조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모양이 특이하여 定止의 형태가 豐厚하다. 청룡은 감싸 안은 듯하고 백호는 倦馴하며 사격은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다. 水法은 通竅하여 千流百派로 뻗어나가되 한 구멍에서 나왔고 현무의 뒤 쪽에서 纏錦을 이루었다. 용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雷風相搏을 이루고 源流에서 山澤通氣하는 것이다. 게다가 洛書數의 4628의 원리에 부합하는 참된 곳이니, 이를 일러 永世無彊之原이라고 할 것이다.”⁵⁹⁾ 이와 같이 유좌유혈에 대한 김상현 지사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의 지사로서 柳東亨의 다음과 같은 짧은 감평이 판세를 뒤집어 놓게 된다. “龍眞穴의(산줄기가 참되고 혈은 제대로 자리함)에 砂水合法(주변산과 물줄기가 법식에 적합함)이나, 申方(남서서)이 空缺하여 凹風(골바람)이 불어올까 우려되는 것이 작은 흠이다.”⁶⁰⁾

‘申方空缺凹風의 우려’라는⁶¹⁾ 한마디가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지사가 말한 ‘영세무강지원’, ‘십전대길’의 찬사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소령원 청룡 2강의 西坐乳穴은 채택되지 못한다. 영조가 살아있었다면 두 번째로 가고 싶어 하였을 ‘어머니와 함께하는 곳’ 소령원에도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59) 위의 책, 49-50면 “昭寧園 靑龍第二岡 乳穴山論 地師 金相鉉 以爲 龍穴行道結作皆以 金水相生 回顧入局之間體特 而定止之形豐厚 靑龍如抱白虎俯馴 砂格得位 水法通竅 千流百派 同出一口纏綿 於玄武之後 雷風相搏 於龍向此 澤通氣於源流 自合於洛書四六二八之理眞所謂 永世無彊之原”

60) 위의 책, 50면 “地師 柳東亨 以爲 龍眞穴的 砂水合法 申方空缺凹風恐有 小欠”

61) 風水理氣論에서 가장 무서운 方位殺은 龍上八殺을 꼽는데, 유좌묘향에서의 용상팔살은 西坐, 西龍에만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巳방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어떤 유파에서는 이것을 號방위 卯向에도 적용하여 申방위에도 용상팔살의 방위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당시에도 신방위에 대하여 이러한 이중적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申方空缺凹風의 우려’는 小欠이 아니라 훨씬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림 8〉 소령원 청룡2강. A지점을 영조원을 후보지로 추정함. 필자 작성

2) 건원릉 영역의 간심

신릉지가 未完定인 상태로 영조가 승하한 지 한 달하고도 며칠이 더 지난 4월 8일에 이르자, 정조는 초조함을 드러내게 된다. 강태릉, 광릉, 현릉을 포함하여 동교지역에서도 찾아볼 것을 지시한다.⁶²⁾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에 건원릉 제2강의 亥坐巳向(남동향)의 자리에 대한 泛鐵看審(나침반으로 살펴봄)에 의한 각 지사들의 감평이 별단으로 올라오게 된다. 우선, 지사 김기량의 감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의 起伏과 勢가 雄偉하고 凡眼으로도 어떠한지의 가늠이 되지만, 煩論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亥坐의 행룡은 辛兌의 中一節을 득하였는데, 이는 古師가 말하길 極稱者라고 할 정도이다. 이 용은 十二節을 이루면서 내려왔는데, 辛兌剝換을 하였다. 이는 지극히 귀한 것이다. 혈은 四畔無虧하고 樓

62) 위의 책, 50-51면 “同日(4월 8일)都廳地師入侍時 傳曰 十餘處看審尚未完定予 心焦迫當復如何 明日 他都廳與錦城尉率地師進詣 康泰陵 光陵 獻陵及所經處 如可看審着意看審毋復如 今日忽忽復命爲之事分付”

臺와 같은 朝案(조산과 안산)을 형성하며, 거북이와 뱀 모양의 산이 捍門(수구 막이)을 형성하니 이 모든 것이 眞格이라는 점에서 合法이다. 더욱이 天市太微 와 南極天乙등의 貴星이 각각의 위치에서 降照하니 이야말로 十全之地라고 해야 할 것이다.”⁶³⁾

한편, 지사 김상현의 감평은 다음과 같다. “용의 行度가 秀發尊特하고 혈의 定止는 풍후하고 단정하다. 용호의 勢는 繞抱拱揖하고, 金魚之水는 合襟의 격을 이루어 주변을 잡아 모은다. 명당의 국은 寬暢하고 氣象和吉이다. 玉樹春風에 精神清朗하고 瓊潭秋月이다. 용의 향하는 방향이 得歸之法이니 거듭 거듭 成配의 眞理에 합한다. 이를 두고 ‘萬世無疆之原’이라고 하는 것이다.”⁶⁴⁾

다음으로 앞의 소령원 유좌유혈에 대해 ‘申方空缺凹風’의 견해를 내었던 류동형의 감평도 이 터가 길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小祖山 佛巖에서 용이 하나 내려와서 山澤으로 달려 東向의 산줄기 하나를 끼워 넣었다. 그 한 가지[一枝]가 土氣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혈을 이루었다. 기특하게도 經緯로 또 한 번 스스로를 감추었는데, 이것이 三十六宮이며 七十二候의 狀이라, 그 모양이 너무 크다. 그래서 ‘天成之原’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⁶⁵⁾ 좀 금작스럽기는 하지만 드디어 간심에 참가한 지사들의 견해가 모두 길한 터라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정조는 신릉지로 건원릉 우 2강의 해좌사향의 자리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⁶⁶⁾

그런데 이곳이 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정말 ‘十全之原’이며 天成

63) 위의 책, 52-53면 “同日(4월 9일)都監別單 健元陵 右二岡 亥坐巳向 山論 地師 金基良 以爲 龍之起伏勢之雄偉 凡眼所知何可煩論 亥坐之行龍也 得辛兌中一節 則古師之極稱者也 此龍則十二節 以辛兌剝換 岂非至貴之格哉 穴則 四畔無虧 而樓臺之朝案 龜蛇之捍門 皆合於眞格 且天市太微 南極天乙等 貴星降照 諸位乃 是十全之地也”

64) 위의 책, 53면 “地師 金相鉉以爲 龍之行度 秀發尊特 穴之定止豐厚端正 龍虎之勢 繞抱拱揖 金魚之水合襟得格 匡郭周圍 堂局寬暢而氣像和吉 玉樹春風精神清朗 瓊潭秋月 龍向得歸之法 自合於耦與耦成配之理眞 所謂萬世無疆之原”

65) 위의 책, 53면 “地師 柳東亨 以爲 祖佛巖 而有龍 龍蛇走於山澤 向東插之一枝留土氣而成穴 經緯奇耦自藏 其宅三十六宮 爲七十二候之狀 像大哉 天成之原”

66) 위의 책, 53면 “同日(4월 9일) 摠護使以下入侍時 傳曰 健元陵 右二岡 今日看審之行 地師 山論 皆以十全之原 天成之地 書啓伐木置標等 節斯速擧行 此是諸陵局內 前期告由一節 亦依例擧行事分付都監”

之地’의 흠결이 없는 터인지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전에 효종 寧陵의 舊壙地였던 곳이었기 때문이다.⁶⁷⁾ 영릉의 구광지였다는 것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생긴다. 첫째가 그 렇게도 좋은 곳이라면 왜 영릉이 이 자리를 버리고 遷陵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미 개토가 이루어진 땅을 왕릉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영릉의 선정과정과 천릉의 과정의 기록을 다시 끄집어내어 살펴보아야 한다.

효종녕릉의 선정에 대한 내용은 현종 즉위년(1659) 7월 11일의 실록기사에 등장한다. 영릉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릉 후보지 즉 수원, 여주 그리고 건원릉의 능역 내의 산줄기를 두고 복잡한 논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⁶⁸⁾ 효종영릉 산릉도감에서 1659년 7월 7일에 당시 관상감 교수이었던 奇重胤이 찾아낸 乾坐 와 방외지사인 潘好義가 제시한 다른 하나의 자리를 두고 서로 비교하는 내용의 산론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당시 관상감 교수이었던 기중윤의 전좌에 대한 감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번[非一二]의 起伏을 거쳐 혈에 이르렀는데, 그 혈 또한 豐厚하고 청룡백호가 重重環抱하는 것이 합격이다. 다만, 內水口가 交鎖(닫힘)없이 평평하게 外堂(외명당)에 접하니 그것이 흠이다.” 한편, 반호의가 찾아낸 별도의 산줄기상의 자리에 대한 감평은 다음과 같다. “산줄기 또한 좋기는 하나 청룡과 백호가 낮아서 안산을 이루니 迫(궁색함)함의 흠이 있다.”⁶⁹⁾ 건원

67) 『正祖實錄』 즉위년 4월 11일 壬子 <대행 대왕의 산릉을 정하고 능 이름을 원릉으로 정하다> (상략) 김기량이 말하기를, “옛 영릉 자리의 體勢는 健元陵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局勢가 비록 건원릉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正軼의 정신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였고, 유동형이 말하기를, “佛岩山의 경간의 면목이 모두 이곳을 향하고 있으니, 진실로 완전한 大地입니다.” 하였으며, 김상현이 말하기를, “온 局 안의 원기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산을 보아 온 지 50년이지만 이와 같은 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옛 壩이라도 또한 껴릴 것이 없습니다.” 하니, 대신 이하가 봉심하도록 명했었는데, 復命에 당하여 똑같은 말로 칭찬하여 아뢰었다. 이 날에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소견하여 두루 물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 능을 결정하고 명칭을 의정한 것이었다.

68) 이에 관한 내용은 박권수, 앞의 논문, 33-47면 참조.

69)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奎1507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3면 “同日 (1659년 7월 7일) 捏護使 啓曰 臣等看審 奇重胤 所得之岡 則來龍起伏者非一二 穴道 豐厚 青龍白虎重重環抱 此則合格 而第內水口不爲交鎖平臨外堂乃 是欠處也 李尙眞 尹善道

릉 영역 내에 두 개의 자리를 놓고 비교한 결과 건원릉 우측의 乾坐(남동향)의 터는⁷⁰⁾ ‘內水口가 交鎖 없이 평평하게 外堂에 바로 접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결국 영릉의 신릉지로 결정되었던 것이다.⁷¹⁾

하지만, 그로부터 14년 뒤인 현종 14년(1673)에 결국 효종영릉은 천릉의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같은 해 4월에 능 주위를 감싸고 있던 석물이 넓게 벌어지는 지경에⁷²⁾ 이르러 외부의 물이 능 내로 스며들까 걱정된다는 보고가 있었다.⁷³⁾

李最晚等 皆以爲欠而 尹絳 李元鎮 奇重胤等 謂之無害. 潘好義 所得之岡 來龍起伏者 亦爲重重 穴道平廣 而龍虎有低處案山似迫 亦此次也”

- 70) 영릉의 조성시에는 건원릉 우2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원릉 우측 건좌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서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서 과연 구영릉의 자리가 원릉의 능지가 된 것인지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원릉산릉도감의궤』의 4월 27일의 계사에서 영릉에 사용했던 석물은 정결한 곳에 묻고 지대석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6월 3일 開廣 看色土를 3차로 封進함에 있어서 金井의 6척 깊이 아래에 묻혀있던 舊灰片을 모두 파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비록 지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영릉지가 바로 원릉의 신산릉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1) 『顯宗實錄』 1권, 현종 즉위년 7월 11일 庚午 <양지당에 나아가 대신들과 산릉 문제를 논의하고 진좌의 산으로 정하다> (상략)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산릉 문제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므로 내 감히 독단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거쳐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신이하 제신들 말이 모두 진좌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고 하니 그리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신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아뢰기를, “이야말로 종묘사직과 신민들에 있어서 더없는 다행입니다.”하였다.
- 72) 위의 책, 현종 14년 3월 24일 甲午 <영립 부령 이익수가 영릉의 파손과 수리에 대해 상소하다> 靈林副令 李翼秀가 상소하기를, “寧陵은 장례를 모신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회를 바르고 수리하는 역사가 거의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갑진년 초겨울에 능밑에 가서 齋郎에게 청하여 자세히 봉심해보니 봉릉의 대세가 서북방으로 기울어진 듯 하였고, 사면의 駕石·屏石 및 裳石·地臺石이 아울러 모두 어긋나서 틈이 생겼는데, 작은 틈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고 큰 틈은 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하였습니다. 전면의 地傍石과 상석 사이에는 더 큰 틈이 생겨서 팔뚝도 들어갈 만하였습니다. (중략) 봉릉이 기울고 무너진 것이 이미 저와 같고 빗물 고이는 것이 또 이와 같으니 땅 속의 일은 비록 망령되게 해아릴 수는 없으나 또한 많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해마다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면에 회를 바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금방 틈이 생겨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가 어렵다면 임시방편일 따름이지, 어찌 편안하고 견고하게 하여 오래 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중략) 신은 삼가 생각건대 국가 陵寢의 일을 경솔하게 함부로 의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변통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遷陵의 일이 중대하므로 행하기 어렵게 여긴다면 대신과 예관에게 물어보고 『禮經』을 참작하여 능침을 改封하소서. (하

결국 4월 19일에는 능을 改封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遷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⁷⁴⁾ 급기야 6월 2일에는 천릉할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의논하게 된다.⁷⁵⁾ 결국, 여주의 세종대왕이 묻혀있는 英陵의 근처로 寧陵이 옮겨가게 되는데, 천릉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改封할 수 없는 부실공사에 의한 대형하자 때문이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산릉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수구가 교쇄없이 평평하게 외당에 접하니 그것이 흠이다’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그 자리가 좋은 곳이었다면 개봉의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영조의 신릉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릉과 완전히 동일한 자리를 두고 감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구와 외당의 흠결에 대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그 다음 따져보아야 할 것은 그곳이 舊壙地로 이미 개토가 된 땅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무덤을 쓰는 경우에 구광지를 꺼리는 경향이⁷⁶⁾ 없었다고 보기는 어

략)”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 73) 위의 책, 4월 5일 甲辰 <영릉을 봉심한 신하들을 인견하다> 상이 영릉을 봉심한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김수항이 도형을 올리며 아뢰기를, “그전에 봉심할 적에는 비록 틈이 있어도 대단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과 크게 다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해와 크게 다르던가?”하자, 수항이 그렇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閔維重이 아뢰기를, “능 위의 물이 반드시 흘러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하고, 수항이 아뢰기를, “다른 능은 지대석 아래에 반드시 掩石을 설치했는데, 영릉은 애당초 엄석을 배설하지 않았습니다.”하고, 대사헌 金徽가 아뢰기를, “石役이 견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하였다.
- 74) 위의 책, 4월 19일 戊午 <영릉 이전에 대해 의논케 하다> 상이 예조 판서 趙珩, 참판 李殷相, 참의 李岱를 불러 일렀다. “실록을 상고해 보고 나서 改封한 규례가 없다면 영릉을 그대로 봉안할 수 없다. 산자리를 정하여 천봉하는 일에 대해서는 該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舊陵을 파묘할 길년을 먼저 알고 싶으니 물리가 地師에게 물어 의논하라.”하였다.
- 75) 위의 책, 6월 2일 庚子 <천릉할 자리를 의논하다>
- 76) 땅속에 어떤 것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한 자료는 『증보산림경제』의 내용 중에 ‘개기법’에서 언급되고 있다. “집터를 닦아서 집을 지을 때는 주인은 반드시 地運과 年運을 가리되 金樓四角에 구속되거나 꺼리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위에서 말한 吉日 밤중에 술과 과일, 포와 식혜, 향과 촛불 등을 정성껏 갖추고 글을 지어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집을 짓는다고 고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비로소 흙을 판다. 땅을 깊게 파서 浮土를 걷어내고 반드시 생흙을 봐야만 파기를 그만둔다. 나무뿌리나 사람

려울 것 같다. 김상현의 ‘옛 壤이라도 또한 꺼릴 것이 없다’는 언급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러한 꺼리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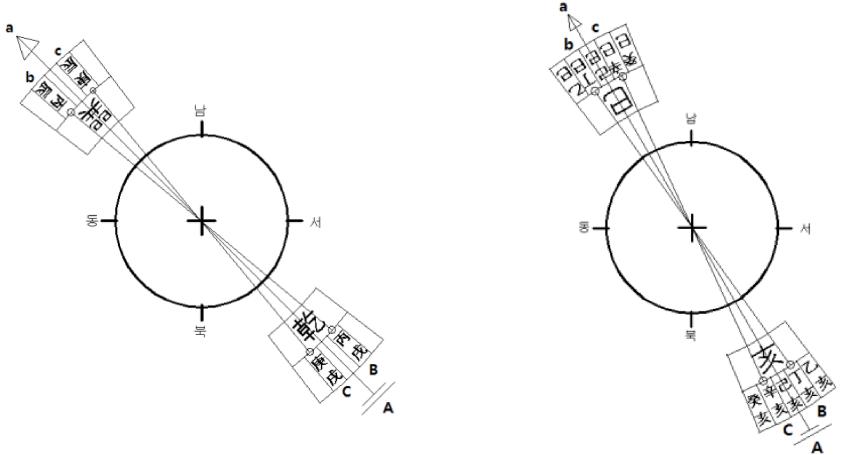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측면의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영조의 신릉지로 결정되었다. 다만, 구녕릉지를 원릉의 신릉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亥入首(해룡)에 乾坐이었던 것을 亥坐로 바꾸었던 것이다. 건좌를 해좌로 바꾼다는 것은 중심은 가만 두고 시계방향으로 15도 회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여러 번 거론하였던 분금과 관련된 사항 때문으로 보인다. 건좌로 하게 되면 분금으로 庚戌·庚辰과 丙戌·丙辰을 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大王年甲拘忌法(이하, 대왕년갑)’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효종의 생년간지가⁷⁷⁾ 己未年(1619) 이므로 그 납음오행이 天上火가 된다. 경술과 경진은 각각 채천금과 백납금으로 화극금의 상극관계를 이루고 있음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병술과 병진은 각각 옥상토와 서중토로서 화생토의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영릉조성 당시 건좌로 하지 않고 亥坐로 하였다면 해좌의 적용가능한 분금은 丁亥·丁巳 또는 辛亥·辛巳가 된다. 정해·정사의 납음오행은 각각 옥상토와 사중토로 상생관계가 되므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해·신사의 경우는 각각 채천금과 백납금의 상극관계로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장년갑’이 비록 숙종이후의 인경왕후의 익릉을 조성하면서부터 제시된 것으로 영릉의 조성이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따져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영릉의 하현궁시기가 己亥年(1659)⁷⁸⁾ 이므로 위의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 머리털을 비롯한 기타의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모두 걷어낸다. 만약 생흙 위에 흙의 성질이 부드러운 테가 있으면, 그 밑에는 반드시 매장된 물건이 있다는 말이므로 자세히 살펴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서유구(안대희 옮김), 2009 『산수간에 집을 짓고: 임원경제지에 담긴 옛사람의 집짓는 법』, 돌베개, 157면 참조.

77) 효종의 생년은 1619년(광해군 11, 己未) 5월 22일이다.

78) 넝릉의 하현궁은 己亥年 1659년 10월 29일 辰時(오전 7~9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9〉 건좌손향(A-a)과 분금 :
丙戌·丙辰(B-b), 庚戌·庚辰(C-c).
필자작성

〈그림 10〉 해좌사향(A-a)과 분금 :
丁亥·丁巳(B-b), 辛亥·辛巳(C-c).
필자작성

한편, 해좌인 원릉의 조성으로 돌아와서 분금을 정해·정사로 하였다는 기록이⁷⁹⁾ 있는데 ‘대왕갑’과 ‘장년갑’을 따져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해·정사는 각기 옥상토와 사중토이고 영조의 생년이 甲戌年(1694)이므로 산두화가 된다. 그래서 일단 ‘대왕갑’에서는 상생관계가 형성되어 문제가 없으며, 하현궁의 시기가 병신년으로서 서로 천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장년갑’에서도 문제가 없다. 만일 구영릉과 같이 건좌로 그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경술·경진과 병술·병진이 분금후보가 되는데, 영조와 효종의 생년남음이 각기 산두화와 천상화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병술과 병진의 분금만 사용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병술과 병진은 하현궁하는 해인 병신과 천간이 같아지므로 ‘장년갑’에 저촉되어 원릉에는 사용불가가 된다. 그래서 결국 건좌손향으로 하지 않고 해좌사향으로 좌향을 잡고 분금을 정해·정사로 하였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79)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179면 “(禮關秩) 元陵右旋左落 辛兌龍 亥入首 亥坐巳向 良兌得水 罢破 丁亥丁巳分金 穿山丁亥 透地辛亥”

사실, 홍릉의 허우지는 ‘장년갑’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였고, 기타의 여러 후보지는 조금씩의 흠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건원릉의 우2강의 경우는 이미 영릉지 선정과정에서 흠결이 지적된 바가 있으나, 좌향만 살짝 바꾸어서 원릉의 신릉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어찌되었던 4월 9일 영릉구광지로 산릉을 정한 후에 그 다음의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4월 10일에 신릉지의 능호를 元陵으로 정하였고, 산릉지의 별목을 위한 고유제와 재간심이 4월 15일에 이루어지고 바로 해좌사향의 봉표가 이루어졌다. 재간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고, 삼간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05년인 순조 5년 1월 12일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승하하였고, 원릉의 영조릉 좌측에 묻혔다.



〈그림 11〉 원릉 :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쌍릉. 2007년 촬영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영릉의 구광지를 영조의 원릉으로 결정한 것은 그 곳이 앞에서 거론된 여러 후보지보다 정말 더 나은 곳으로 흠결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정황상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어떻게든 적당한 곳으로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것을 당사자인 정조와 이 일에 관여한 관리와 지사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서둘러서 그곳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⁸⁰⁾

5. 결론

본 연구는 우선 영조가 자신의 신후지지를 홍릉의 허우지에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유로 ‘拘忌年甲의 前例’ 즉 ‘長年甲避之法’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었다. 산릉도감의궤나 실록에 등장하는 기록만으로 살펴볼 때는 산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비전에서 개입하는 일이라고는 銀을 내놓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도 계비 정순왕후의 경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였던 관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정치적 원인을 입증할 비화가 있을지 몰라도 허우지를 피하게 하였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년갑피지법’의 적용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영조가 홍릉의 허우지로 가지 못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얻은 부수적 연구성과라면 ‘대왕년갑’과 ‘장년갑법’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들 수 있겠다. 대왕년갑은 소위 분금과 왕의 생년의 납음오행간의 상생상극을 따지는 것으로, 상생일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장년갑은 숙종때 인현왕후의 익릉을 조성하면서 김명하에 의하여 처음 거론되었던 것인데, 분금과 장례를 지내는 해의 천간이 같은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영조의 허우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홍릉의 허우지가 불발이 되었다

80) 동구릉의 舊寧陵地가 원릉자리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본 연구는 순수하게 풍수적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해득은 앞의 책에서 “정조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홍릉의 풍수가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둘째는 사도세자를 모신 永祐園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생각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정해득, 앞의 책, 209-210면 참조.

고 하더라도 하필 영릉의 구광지로 가게 되었나 하는 것이었다. 신릉지의 강력한 후보지이었던 흥릉의 허우지가 불발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후보지로 나온 것이 소령원의 유좌유혈이었는데, 이곳은 초간심, 재간심에서 十全之地, 純吉之地, 眞龍正穴之地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령원의 유좌유혈은 삼간심에서 정밀한 泛鐵看審의 결과 ‘申方空缺凹風恐有’의 의견이 제시되어 또한 무산되었다. 영조가 살아있었다면 두 번째로 가고 싶어 하였을 그 곳, 생모가 있는 소령원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조의 신릉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영릉지가 있는 건원릉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구영릉지를 영조의 신릉지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 첫 번째가 구영릉지가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왜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천릉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왕릉의 자리로서 이렇게 이미 개토가 이루어진 구광지를 사용하는 것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천릉의 이유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생긴 하자가 너무나 심각하여 전면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또 완전히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여 다시 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믿기는 어렵지만, 기록상으로만 판단할 때는 영릉의 천릉이 소위 말하는 길지로서 흠결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광지를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터가 워낙 길지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군신 간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간 것이었다.

원릉의 선정시에 참가한 지사들의 의견에는 없었지만, 영릉의 선정과정에서 이미 ‘內水口가 交鎖 없이 평평하게 外堂에 접한다’고 하는 단점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소령원의 유풍관련 단점보다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무결의 터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완전한 길지라는 명분으로 구광지에 대한 거리낌을 불식시킨 것도 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어찌되었던 구광지는 결국 원릉으로 재탄생되는데, 견좌손향이었던 좌향을 시계방향으로 15도 회전시켜 해좌사향으로 하고 분금을 그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舊陵地를 新陵地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나침반 상의 좌향만 살짝

변화시킨 것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시간적 손실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산릉도감의궤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릉의 혀우지가 불발이 된 것은 소위 ‘장년갑피지법’이라고 하는 분금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이었고, 소령원의 유좌유혈지가 불발이 된 것은 ‘요풍의 우려’ 때문이었으며, 영릉의 구광지에 원릉을 조성하게 된 것은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간적 촉박함’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해볼 때, 정조에게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 다른 곳을 물색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영조가 생전에 원하였던 흥릉의 원비 곁으로 가지 못한 것은 계비인 정순왕후의 탓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조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영조가 승하한 해의 年運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풍수, 조선왕릉, 원릉, 분금, 정순왕후

투고일(2017. 6. 23), 심사시작일(2017. 7. 5), 심사완료일(2017. 7. 27)

〈Abstract〉

The Study on GanSim(看審) for Constructing the Royal Tomb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 Focusing on Constructing Wonneung(元陵) –

Zho, In-choul *

This thesis is about placing of royal tomb of Yeongjo(英祖) who is the 21st king of Joseon dynasty. The royal tomb of Youngjo was named Wonneung(元陵). There were many twists and turns when placing Wonneung site in Dongguneung(東九陵).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anshim(看審, evaluating a site) which was given by administrators or geomancers in site selecting process at that time. And next is to scrutinize the effect of Ganshim on deciding the site for Royal tomb.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son why Yeongjo could not be placed on the right side of his Queen's tomb which was a chosen site before his dead. And also, this study is to discover why they chose the right area of Geunwonneung(健元陵, the first king's tomb of Joseon Dynasty) as Wonneung site among many op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reason of not being placed in Hongneong(弘陵) heohuji(虛右地), which was his chosen site for his after dying tomb, is because of the so called jangyeongappijibeob(長年甲避之法). Burial time and Bungeom(分金, space angle coordinate) could be indicated as 60 gapja(甲子). According to Jangyeongappijibeob(長年甲避之法), if time and space angle match up as the same first letter of cheongan(天干), it is considered as an ominous case, and Hongneong was one of them.

There was some hesitation in making former Neung leong(寧陵) site as Won leong, but a problem of the great urgency surpassed this weak point. As a result, they could use the former tomb site as a new one by only changing back and head orientation, and it was the best way to change old to new without spending any time or manpower.

Over viewing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nd Shan Leong

* Professor, Dept. of Oriental Science, Wonkwang Digital University.

Do Gam Yui Gwea(山陵都監儀軌),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His new young Queen-Jeongsoon(貞純王后) is not to be blamed for Young Jo(英祖)'s not being able to be placed on the side of his former queen's tomb, Hong leong. And also, it is not because of Jeong Jo(正祖) though he had an authority to change it. Only because, there were an inharmony between the earth fortune and his death year.

Key Words : Fengshui, Joseon Royal Tomb, Won leong, Divided angle, Queen-Jeongsoon